

이사회규정

제정 1999. 6. 8
개정 2000. 2. 9(개폐정리)
개정 2000. 4. 24
개정 2001. 11. 6.
개정 2002. 5. 29
개정 2003. 4. 14(개폐정리)
개정 2003. 6. 16(개폐정리)
개정 2003. 6. 25(개폐정리)
개정 2003. 12. 24(개폐정리)
개정 2004. 7. 7
개정 2004. 12. 9
개정 2005. 6. 21(개폐정리)
개정 2006. 10. 31
개정 2006. 12. 8(개폐정리)
개정 2007. 5. 4
개정 2007. 6. 25
개정 2008. 2. 13
개정 2008. 10. 29
개정 2009. 2. 10
개정 2009. 4. 23
개정 2009. 5. 28
개정 2010. 2. 1(개폐정리)
개정 2010. 2. 26
개정 2010. 5. 26
개정 2010. 11. 17
개정 2011. 6. 9(개폐정리)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1. 30
개정 2012. 1. 31
개정 2012. 4. 12
개정 2012. 6. 20
개정 2012. 7. 10
개정 2012. 9. 11(별표)
개정 2013. 4. 25(개폐정리)

개정 2013. 4. 30(개폐정리)
개정 2013. 5. 31(개폐정리)
개정 2013. 6. 25(별표)
개정 2013. 7. 30(별표)
개정 2013. 8. 27(별표)
개정 2013. 9. 24(별표)
개정 2013. 12. 26(별표)
개정 2014. 5. 20(별표)
개정 2014. 6. 20(별표)
개정 2014. 9. 19(별표)
개정 2015. 5. 6(별표)
개정 2015. 5. 27(별표)
개폐정리 2015. 6. 30
개정 2015. 12. 24(개폐정리)
개정 2015. 12. 29(별표)
개정 2016. 5. 30(별표)
개정 2016. 6. 28
개정 2017. 1. 25(별표)
개정 2017. 3.13(별표)
개정 2017. 3. 16(개폐정리)
개정 2017.12.22.(별표)
개정 2018. 2. 6.(별표)
개정 2018. 3.29.
개정 2018.10.09.(개폐정리)
개정 2018.12.21.(별표)
개정 2019. 5.24.
개정 2020. 3.17.(개폐정리)
개정 2020.4.24.(별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공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폐정리 2015. 6.29>

② <삭제 2003.6.16>

제5조 (소집권자 및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제9조의4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2.26>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0.2.26>

제6조 (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안건을 그 회일 7일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 1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16, 2007.5.4>

제7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 및 상법 제398조에 의한 이사 등과 공사간 거래의 승인에 관한 결의는 재적이사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단서신설 2007.5.4.><단서개정 2018. 3.29>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14><개폐정리 2015. 6.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목적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면결의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5.4>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4>

제8조 (결의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는 공사 업무의 중요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5.4><개폐정리 2015. 6.30>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

다.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지정

2. 정관 및 중요규정에 관한 사항

가. 정관변경안의 심의

나. 중요한 규정(별표) 및 약관의 제·개정. 다만, 관계법령 또는 직제규정 등 기타 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개폐정리는 제외한다.

3.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가. 연간업무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장기 경영목표수립
<개정 2007.5.4>

나.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편성 및 운용계획 <개정 2007.5.4>

다. 예산의 이월 및 예비비사용승인 <개정 2007.5.4>

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마. 채무부담행위의 종류 및 한도의 승인. 다만, 보증·융자업무 또는 보증 채무이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사.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아.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자. 보증료율 및 융자금이자율등의 결정

차. 채권관리규정에 의한 채권상각 및 채무감면의 승인

카.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출자·출연.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업체에 대한 출자전환은 제외한다. <개정 2000.4.24, 2007.5.4, 단서신설 2007.6.25>

타. 업무위탁의 결정

파. <삭제 2000.4.24>

하. 영업부서의 설치 또는 폐지<개정 2016. 6.28>

거. <삭제 2007.5.4>

너. 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5.4>

더.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정관제51조제1항제4의3호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증권(CBO) 또는 대출채권유동화증권(CLO)의 후순위증권(정부가 2010년 8월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에 의하여 발행되는 채권에 한함)에 대한 매입업무 <신설 2010.11.17.>

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정관 제58조제1항제13호에 의하여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중 정부가 2019년 4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에 대한 매입업무 <신설 2019. 5.24>

4.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삭제 2003.12.24>

나. 부사장의 선임 <개정 2010.2.1>

다. 사장의 사고시 직무대행순위 결정

라. 상법 제398조에 의한 이사 등과 공사간 거래의 승인<신설 2018. 3.29>

마. 타회사의 임원겸직의 승인

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과의 경영계약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1.11.6, 개정 2003.12.24, 2007.5.4>

사.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신설 2001.11.6, 개정 2007.5.4>

아.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신설 2003.12.24, 개정 2007.5.4.><개폐정리 2015. 6.30>

자.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제7조에 따른 직무청렴위반결정 <신설 2006.10.31, 개정 2007.5.4>

차. 사장 및 상임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07.5.4>

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해임요청
<신설 2007.5.4>

타. <신설 2009.2.10.><개폐정리 2017.3.16., 2020. 3.17>

5. 기타

가. 경영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선임

나. 주주총회의 결의등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다. 기타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및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0.4.24>

③ <삭제 2007.5.4>

④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4>

1. 국정감사,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 감사와 동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 (상임이사회) ① 이사회내에 상임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제외한다. 다만, 상근감사위원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3. 6.16, 2005.6.21.>
<개폐정리 2015. 6.29>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개폐정리 2015. 6.30><삭제 2018. 3.29>

나.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및 사무취급장소·대행업무범위의 결정
다. <삭제 2018.10.09>

라. 영업부서의 이전<신설 2016. 6.28>

2. 다른 규정에서 상임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및 기타 이사회에서 개별 결의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또는 조건을 정하여 위임한 사항

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임이사회는 제2항제1호의 결의사항을 비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각 비상임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결의한다.<개폐정리 2015. 6.29>

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는 상임이사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4.24]

제9조의2 (삭제 2007.5.4)

제9조의3 (비상임이사회) ① 공사에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비상임이사회를 둔다.<개폐정리 2015. 6.30>

② 비상임이사회 의장은 제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선임비상임이사로 한다.

③ 비상임이사회는 의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④ 비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 의결에 앞서 심의한다.

1.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장의 경영계약안에 관한 사항

3.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에 관한 사항

4. 상임이사(사장포함)의 청렴의무 위반여부, 제재수준 결정 등 직무청렴계약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목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규정

나.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다.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6. 기타 공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폐정리 2015. 6.30>

⑤ 제6조, 제7조(제4항 단서조항 제외), 제10조, 제11조는 비상임이사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를 준용함에 있어 회의소집통지일은 회일 3일전까지로 한다.

⑥ 사장은 비상임이사회회의 원활한 회의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5.4]

제9조의4 (선임비상임이사) ① 공사는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개폐정리 2015. 6.30>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10.2.26>

③ <삭제 2010.2.26>

[본조 신설 2007.5.4]

제9조의 5 (감사 요청등) ① 비상임이사는 2인 이상의 연서로 공사 운영과 관련 하여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1항 및 2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5.4]

제10조 (의사록)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개정 2000.2.9 , 2003. 6.16><개폐정리 2015. 6.29>

제11조 (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12.8> <개폐정리 2011.6.9., 2013.4.30., 2015.12.24>

제12조 (경비 등 지급) ① 공사는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소위원회 등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회의참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은 경비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② 제1항의 경비 및 회의참석비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2.5.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이사회규정은 이를 폐지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제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2. 9>

이 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보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9조제2항 및 제3항단서중 “이사회”를 각각 “상임이사회”로 한다.

부 칙<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사장과 체결한 경영계약 및 평가, 보상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5.29>

이 규정은 200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14>

이 규정은 200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6.16>

이 규정은 200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6.25>

이 규정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4>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이 규정은 200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200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5. 6.21>

이 규정은 상근감사위원이 선임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31>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08>

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상임이사회규정 제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천만원 이하의 출자·출연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사회운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7. 6. 25>

이 규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3>

이 규정은 200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9>

이 규정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0>

이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3>

이 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8>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1>

이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6>

이 규정은 201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6>

이 규정은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7>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9>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7>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0>

이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1>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2>

이 규정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0>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0>

이 규정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1>

이 규정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25>

이 규정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30>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1>

이 규정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5>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30>

이 규정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27>

이 규정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24>

이 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5>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상임이사회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소관이 아닌 기타 회사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부 칙 <2015. 5. 6>

이 규정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27>

이 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9>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30>

이 규정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5>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13>

이 규정은 2017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16>

이 규정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2.>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6>

이 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보증규정 제10조 중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상법 제398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의 “상임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②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1항 중 “공사의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이사회규정제9조의 절차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상법 제398조각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상임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2. 제19조 및 제26조 중 “상임이사회”를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로 한다.

③후분양대출보증규정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1항 중 “공사의 비상임이사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이사회규정제9조의 절차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상법 제398조각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상임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2. 제19조 중 “상임이사회”를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로 한다.

④모기지보증규정 제6조 중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상법 제398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의 “상임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⑤전세보증금반환보증규정 제31조 중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상법 제398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의 “상임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⑥임대관리보증규정 제9조 중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상법 제398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의 “이사회규정 제9조에 따라 상임이사회”를 “이사회”로 한다.

부 칙 <2018.10.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중요사항 2.라.”를 삭제한다.

부 칙 <2018.12.21>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24>

이 규정은 201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17>

이 규정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24>

이 규정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8조관련)<개정 2003.6.16, 2003.6.25, 2003.12.24, 2004.7.7, 2004.12.9, 2006.10.31, 2007.5.4, 2008.2.13, 2008.10.29, 2009.2.10, 2009.4.23, 2009.5.28, 2010.5.26, 2010.12.31, 2011.12.27, 2012.1.30, 2012.1.31, 2012.4.12, 2012.6.20, 2012.7.10, 2012.9.11, 2013.4.25, 2013.6.25, 2013.7.30, 2013.8.27, 2013.9.24, 2013.12.26, 2014. 5. 20, 2014. 6.20, 2014. 9.19, 2015. 5. 6, 2015. 5.27, 2015.12.29, 2016. 5.30, 2017.1.25, 2017.3.13, 2017.12.22, 2018. 2. 6, 2018.12.21, 2020. 4.24> <개폐 정리 2015. 6, 2020. 3.17>

이사회 의결규정

구 분	규 정 명
기 본 제 도	이사회 규정 직제 규정 취업규칙 감사위원회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임원직무청탁계약 규정
인 사 복 지	인사 규정 징계 규정 보수 규정 복지 규정 연봉제 규정 경영지원직 운영 규정
영 업	보증 규정 용자 규정 담보 규정 주택사업금용보증 규정 주택구입자금보증 규정 주택임차자금보증 규정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규정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규정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정 임차료지급보증 규정 후분양대출보증 규정 모기지보증 규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정 임대관리보증 규정 단독주택보증 규정 보증한도 규정 공유형모기지보증 규정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 규정 리츠회사채보증 규정
관 리	보증채무 이행 규정 채권관리 규정 환급이행사업장공사후매각 규정
채 무	자금운용 규정
매 입	미분양주택일시매입사업 규정
편 입	미분양투자상품분양보증편입 규정
수 탁 위 탁	용자수탁업무취급 규정 주택개량자금용자수탁업무취급 규정 공유형모기지수탁업무취급 규정
정 비 사 업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규정 리모델링자금보증 규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규정
준 법 통 제	법무 규정